



# 맥주용기 표시

## Labeling Required for Beer Containers

伊 藤 一 德 / 삿포르 맥주(주) 신가치개발부 패키징 기술개발센터

### I. 서론

맥주메이커 각사에서는 고객의 기호의 다양화에 동반하여 국산맥주, 수입맥주 등 많은 각 종의 맥주가 개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의 냉 케이스 등에는 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으며, 고객의 눈을 끌도록 각 사에서도 용기의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맥주용기에는 다양한 표시가 의무로 되어있다.

현재, 맥주용기의 표시에는 식품위생법 및 주류업조합법 등의 법률로 의무가 된 표시항목이 있다. 또 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의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맥주의 표시에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쇼와 54년)과 「수입맥주의 표시에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쇼와 57년)이 제정되어 이 규약에 근거하여 표시를 행하고 있다. 더욱이 영양성분표시, 리사이클마크 등 다양한 표시가 빼곡히 기재되고 있다. 맥주에 요구되는 용기의 표시에 관하여 실제 상품을 참고하여 상품에 어떤 식의 표시를 행하고 있는가를 소개한다.

### 1. 맥주용기 표시항목

맥주용기에는 법률 및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하여 필요한 표시항목, 특징의 표시의 기준 및 금지 표시에 관한 표시의 룰이 정해져 있다. 이것 이외에도 업계나 맥주메이커가 주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표시가 있다.

#### 1-1. 필요한 표시

여기에서는 관계법률 및 공정경쟁규약에 따라서 맥주용기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한다((그림 1) 참조).

##### 1) 맥주의 뜻

「비어」 또는 「맥주」 또는 「○○맥주」라고 표시한다((그림 2) 참조). 또 표시방법에 관해서도 상세한 약정이 있다.

##### 2) 원재료

일반의 식품에서는 JAS법에 근거하여 원재료를 기재하고 있으나, 주류는 JAS법의 적용외이다. 맥주의 경우는 원재료의 사용량의 많은 순이 아니라 「주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사진 1] 맥주의 캔용기의 표시



정해진 순으로 표시하고, 「맥주의 표시에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으로 정해져 있다. 단지 옥수수는 큰, 튀김은 전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개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표시되고 있는 보존방법으로 풍미 및 안전성 등의 기대되는 품질특성이 충분보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시기를 말한다. 맥주를 포함한 주정음료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맥주표시에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에 의해서 맥주의 경우는 유통기한표시를 행하는 물로 되어있다. 원칙으로써 「년월일」까지의 표시가 필요하지만 유통기한이 3월을 넘은 경우에는 「년월」까지의 표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시방법에 관해서도 용기마다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다.

① 병에 담은맥주가 있어서는, 그 사용하는 외선의 해당개소를 잘라 없애는 방식 또는 라벨에 인자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림 2] 맥주라는 뜻을 표시



② 깡통 그 외의 맥주가 있어서는 캔체 등에 인자하는 방식으로 한다.

4) 보존방법 취급상의 주의 등

보존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 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예를 따르고 그 뜻을 표시한다.

① 병에 담은 맥주의 예

「주의, 병이 깨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병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냉동 및 양지에서 의 보관은 피해주세요」 등

② 캔맥주의 예

「주의 캔이 파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캔으로 의 충격, 냉동고보관을 피하고, 직사광선의 차내 등 더워지는 장소에 장시간 놓지 말아주세요」 및 「빈 깡통은 버리지 않도록 협력해주세요」 등

5) 내용량

내용량은 「밀리미터」 혹은 「ml」, 또는 「리터」 혹은 「l」로 표시한다.

6) 알콜 분

「알콜 분」의 문자의 뒤에 내용량 비로 〇%로 표시한다.

7) 사업자

사업자의 법인명 및 본사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8)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국세청고시 제9호(헤이세이 원년 11월 22일)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그림 3] 용기의 식별마크



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었다.

### 9) 용기의 식별마크

「강철제 또는 알루미늄제의 캔으로, 음료가 충전된 것의 표시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을 정하는 성령(헤이세이 3년 10월25일, 대장·농림수산·통상산업성령 제1호)에 근거하여, [그림 3]의 표기마크를 2개소에 표기하고 있다.

## 1-2. 특정용어의 표시

다음의 용어가 표시되어있는 경우는 각각의 항목에 기재되어있는 기준의 맥주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필요한 표시항목이 아니라 표시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어도 표시의무가 없는 임의의 표시항목이다. 일본의 문자나 문장에 의하지 않는 표시도 똑같다.

### 1) 러거 맥주

저장공정으로 숙성시킨 맥주가 아니면 러거 맥주라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 2) 생맥주 및 드래프트 맥주

열에 의한 처리(피스트리제이션)를 하지않은 맥주가 아니면 생맥주 또는 드래프트 맥주라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 이 표시를 하는 경우는

「열처리를 하고 있지 않음」 의도를 나란히 쓰지 않으면 안된다.

### 3) 흑맥주 및 블랙 맥주

짙은 색의 맥아를 원료의 일부로 사용한 색이 진한 맥주가 아니면 흑맥주 또는 블랙 맥주라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 4) 스타우트

짙은 색의 맥아를 원료의 일부로 사용하고, 색이 진하고, 향미가 특히 강한 맥주가 아니면 스타우트라고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특정용어의 표시기준은 맥주를 네 개로 분류한 것 이 아니라 각각의 용어를 표시하는 경우의 필요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러거 맥주의 조건과 생맥주의 조건과를 충족시키고 있으면 러거 맥주를 생맥주라고 표시해도 지장이 없다. 이 것은 이것들 네 개의 항목모두에 해당한다.

또 상기4항목의 외에 「특제」, 「음양」 등 제조방법에 관한 문언 및 「고농도」, 「고알콜」 등의 품질, 성분과 관련된 문언은 「맥주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에 의해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1-3. 금지된 표시

공정경쟁규약으로 맥주에 관련하여 금지되고 있는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맥주가 아닌 것이 맥주인 것처럼 오인될 위험이 있는 표시

2) 맥주의 품질이 맥주 이외의 다른 상품보다 특히 우수하다와 같은 오인될 위험이 있는 표시

3) 생맥주의 품질에 관하여 오인될 위험이 있는 표시

[그림 4] 그 외의 표시



- 4) 성분, 원료, 품질 또는 제법에 관한 실제의 것보다도 우량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 표시
- 5) 전통, 역사, 제조기술, 생산규모, 생산설비, 판매량, 판매비율 그 외에 사업자의 실태에 관하여 실제의 것 또는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련된 것보다도 현저히 우위에 있다고 하는 오인될 위험이 있는 표시
- 6) 상이 아닌 것을 상이라고 하는 오인될 위험

- 이 있는 표시
- 7) 원산국, 산지 등에 관하여 오인될 위험이 있는 표시
- 8) 원재료의 원산국에 관하여 마치 그 원산국의 물건만을 사용하고 있는 듯이 오인될 위험이 있는 표시
- 9)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제조에 관련된 맥주를 중상하고, 비방하고 또는 이것들의 신용을 훼손하도록 하는 표시

[그림 5] 카본풋프린트 마크



- 10) 전각호를 드는 것 외에 자기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맥주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실제의 것 또는 자기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계된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 또는 유익하다고 하는 오인을 불러올 만한 위험이 있는 표시

1-4. 자주적인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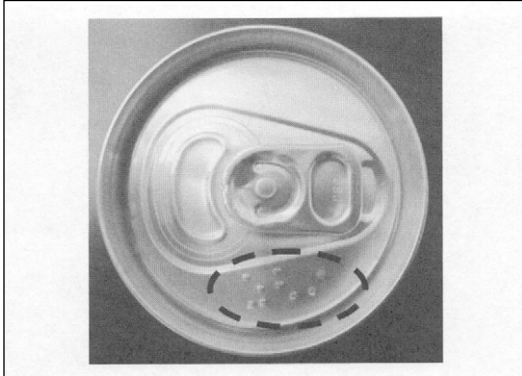
- 1) 임신부의 음주주의 표기  
임산부에의 주의사항으로써 「임신 중 및 수유기의 음주는 태아, 유아의 발육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한다.

2) 영양성분표시

근년의 건강지향에 의한 고객의 요망에서 영양



[그림 6] 점자표시



성분의 표시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맥주에서는 영양성분표시는 의무표시가 아니지만,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로 「건강증진법」의 표시기준에 근거한 표시의 상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에도 프린체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또한 칼로리 오프 및 당질오프 등의 소위 맥주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상품의 경우는 영양성분표시가 필수가 되었다.

3) 그 외

이 외에도 상품의 특징을 어필하는 표시, 고객센터의 연락처, WEB 어드레스 및 바코드표시 ([그림 4] 참조) 등이 있다.

## 2. 수입 맥주

일본에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의 맥주는 「수입맥주의 표시에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하여 표시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필요한 표시항목」 「특정용어의 표시기준」, 「부당표시의 금지」는 국산맥주의 공정경쟁규약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단지 외국산이라고

[그림 7] 2차원바코드(QR코드)



하는 것로부터 「원산국의 표시」 「수입업자의 이름·소재지의 표시」가 의무로 되어있다.

## 3. 이후의 새로운 표시

현재 맥주용기에 표시되고 있는 것 외에 환경으로의 배려 및 오염방지를 위한 배려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표시기준의 재검토 및 새로운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예로써 환경대응과 알콜 식별표시에 관하여 소개한다.

### 3-1. 환경대응표시에 관하여

요 몇해 사이 고객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대처로써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카본풋프린트(CFP: Carbon Footprint of Products)제도의 대처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11월에 카본풋프린트마크가 결정되었다([그림 5] 참조).

이 마크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가 지구환경에 남긴 CO<sub>2</sub>의 족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시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CO<sub>2</sub>배출량삭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는 목적도 있다.

### 3-2. 알콜 식별표시에 관하여

현재, 맥주 캔의 뚜껑에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의 표시가 되어있다. 이 점자에는 「술」 및 「알콜」이라고 표의되어있다(그림 6) 참조).

그렇지만 실제로 점자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자는 약1할 정도이다. 또 한층 더 미성년자의 오음방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시각장애의 유무 및 연령에 관계없이 알콜 음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시가 이후에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II. 결론

맥주용기의 표시는 「식품위생법」 및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련된 법률(주류업조합법) 등의 법률과 「맥주의 표시에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표시항목, 표시방법, 표시문자의 크기 등이 정해져 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년에는 식품의 안전성은 고객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관심 사항이다. 고객이 구입하는 때의 판단기준의 대부분은 상품의 용기에 써져있는 표시이다. 그러한 중에 고객의 상품정보의 요구는 높아지고 용기의 표시는 이후 더욱 늘어나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중에 2차원 바코드 등에 의한 정보를 발신가능한 표시방법이 더욱 넓혀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림 7) 참조).

이후는 특히 환경 및 안전성에 배려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납득하여 상품을 구입 가능하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표시를 도입해나가고 싶다. [K]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